

# 우리도 특허 대통령을 바란다



임근영 주임연구원  
한국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1. 글에 들어가며

작년 2002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 쟁점이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평가뿐만 아니라 후보 개인에 대한 인물 탐구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이 그 시대가 바라는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이력 중에서 특이한 사실이 하나 밖혀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것은 다른 나라 노무현 당선자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 독서대를 개량 발명하여 특허(엄격히 말하면 실용신안)를 출원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 언론사는 94년 인명관리 컴퓨터 프로그램인 '노하우 2000'을 스스로 개발해 사용한 사례와 함께 노무현의 에디슨적 기질, 실사구시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1)</sup>

필자는 발명과 특허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이력은 실제로 놀라운 사실로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동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및 정책에 있어서 지대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중요한 단 한사

람의 공직자이며 민중의 보호자 또는 모든 국민을 위한 대표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국회와 거대한 정부관료 조직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것들을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간주된다.<sup>2)</sup>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정책을 선정하고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한다.

자신의 관심사는 당연히 자신이 벌이고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독서대를 개발하여 실용신안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은 발명과 특허에 대한 인식이 역대의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인하여 지식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특허제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서설이 길었기는 하지만, 본 글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식재산권의 최대 수출국이자 특허제도 강화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미국에서 대통령의 특허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미국의 과거 및 현재 특허제도 및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특허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자 한다.

1) 조선일보, [노무현 인물탐구] "인간 노무현" (2002.04.27)

2) 데이비드 R. 베어맨, 「미국의 정치와 정책결정」, 1983년, 162면.

## 2. 미국 대통령과 특허

### 2-1. 한국 특허대통령과 미국 특허대통령

미국의 200여년의 역사상 대통령은 초대 워싱턴 대통령으로부터 현재 W. 부시 대통령까지 43명이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허를 보유한 적이 있었던 대통령이 있을까? 15대 링컨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유일한 특허권 보유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꼽았는데,<sup>3)</sup> 이 두 사람 모두 한국과 미국에서 유일한 특허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또한 발명을 하게 된 동기도 똑같이 생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라는 것도 시대를 초월한 양국의 대통령을 비교함에 있어서 재미있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위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공부를 하다가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혹은 “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 고개를 숙여 시력저하는 물론 목디스크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sup>4)</sup> 이를 방지하고자” 독서대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한편, 링컨 대통령은 미시시피강과 5대 호(Great Lakes)에서 겪은 선박 사고에서 발명의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sup>5)</sup> 링컨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 미시피 강을 따라 선박으로 운송업을 하였는데, 하루는 배가 덤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가까스로 빠져 나오기도 하였고, 그 후 몇 년 뒤에 Great Lakes에서 링컨의 배가 모래톱에 치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링컨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의원 시절에, “여울위 선박 부양 장치(A

Device for Buoying Vessels over Shoals)”로 특허를 받았다. (특허번호 6,469호, 1849년 5월 22일) 동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배가 얇은 물위로 지나갈 때, 밑을 공기로 채우면 선체가 부양하여 부딪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링컨 대통령이 직접 만든 동 발명의 목조 모델은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중에게 판매된 적이 없었다.<sup>6)</sup> 이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독서대가 상품으로 개발되어 시판된 적이 있다는 것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미국 남북 전쟁동안, 링컨 대통령은 철갑 선박, 관축 기구(氣球), 후장식의 장총 그리고 기관총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무기 개발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1858년에는 특허법의 도입을 세계사에서 미국의 발견과 인쇄의 완성과 더불어 3가지의 가장 중요한 발명 중의 하나로 불렸으며,<sup>7)</sup> “특허제도는 ... 제한된 기간동안 자신의 발명에 대한 배타적 사용을 발명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발견과 새롭고 유용한 물품의 발견 및 생산에 있어서 천재라는 불꽃에 이익이라는 연료를 부여하는 것”<sup>8)</sup>이라고 선언할 만큼 특허법 등을 포함한 특허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 2-2. 초기 미국 대통령과 특허제도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서 지식재산권 특허 특허에 대한 인식은 초기 건국 때부터 놀라울 정도로 높다. 1787년 제헌헌법에서 최초로 발명품에 대해서

3) 노무현, 「노무현이 만난 링컨」, 학고재, 2001년.

4) goodday, “발명가 노무현…고시시절 독서대 개발 특허권까지 따”, 2002년 12월 22일.

5) “Creation of the US Patent System”, (<http://www.ideafinder.com/history/inventions/story096.htm>), 2003년 1월 30일 방문.

6) 링컨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링컨 특허의 150주년 기념 전시회”, 1999년 2월 11일, (<http://www.alincoln-library.com/Apps/news/1999-0211.asp>), 2003년 1월 30일 방문.

7) “Points To Ponder - A Patent for a President, Abraham Lincoln”, ([http://inventors.about.com/library/inventors/blkidprimer6\\_12pres.htm](http://inventors.about.com/library/inventors/blkidprimer6_12pres.htm)) 2003년 1월 30일 방문.

8) The Patent System... secured to the inventor, for a limited time, the exclusive use of his invention and thereby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in the discovery and production of new and useful things. (“Creation of U.S. Patent System”, <http://www.ideafinder.com/history/inventions/story096.htm>, 2003년 1월 30일 방문.)

특허 및 저작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한 이후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오지 워싱턴 대통령(1789년~1796년)은 1790년 1월 미국 첫 의회에서 행한 연두교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새롭고 유용한 발명의 도입에 대한 장려책을 권고하였다.<sup>9)</sup> 그 후 1790년에 미국 최초의 특허법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워싱턴 대통령은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하였다.<sup>10)</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허법을 포함한 미국 특허제도의 초기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통령은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1801년~1809년)이다. 제퍼슨 대통령은 1790년 특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위원회(Patent Board)<sup>11)</sup>의 위원이었으며, 1790년 특허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된 1793년 특허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국무장관이자 스스로도 발명가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특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제퍼슨은 미국의 최초 특허 심사관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초기 특허는 국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전쟁부 장관의 손을 거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의 서명을 얻을 후에 인정되었다.

토마스 제퍼슨의 집무실은 자신이 고안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제퍼슨 대통령의 발명품은 마카로니 기계, 회전 의자(swivel chair), 구형 해시계(spherical sundial), 흙밀이 판이 달린 쟁기(moldboard plow), 암호회전판(cipher wheel) 등이었으며, 암호회전판은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해독할 수 있는 독창적인 장치였다. 제퍼슨의 암호회전판은 1802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에 재발명되어 미국 군대에서 메시지의 전달에 사용되었다.<sup>12)</sup> 이렇게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서 역

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룬 발명가였다. 하지만, 제퍼슨 대통령은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보유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믿었으며, 다른 이들이 새로운 발명으로 인한 혜택을 박탈당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제퍼슨의 특허에 대한 초기의 견해는 그가 민주주의와 평등의 신봉자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다. 제퍼슨은 특허를 불공정한 독점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발명에 대해서는 대단한 애정을 보였다.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아이디어 중 어느 것도 원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융합하여 새로운 발명이라는 것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sup>13)</sup> 그러나 이러한 특허 독점에 대한 거부감은 후에 완화되었다. “발명가에게 얼마간의 특정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발명의 재주(독창성)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던 것이다.<sup>14)</sup> 제퍼슨은 그가 미국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발명의 증진을 특허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정책을 형성하였다.

특허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다른 개념으로 인하여 제퍼슨은 발명을 존중하는 동시에 발명의 정의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또한 특허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가하여 유지하였다. 즉, 현대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새로운 특허 출원에 있어

9) Kenneth W. Dobyns, *The Patent Office Pony - A History of the Early Patent Office*, Sergeant Kirkland's, 1997년. 21면.

10) “Which US Presidents were the most successful inventors?”, (<http://www.inventionmysteries.com/article2.html>), 2003년 1월 30일 방문.

11) 국무부가 특허 발행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국무부 장관, 전쟁부(지금의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허 위원회는 청구서에 묘사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용하고 중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허 청구서를 검토하였으나 충분히 유용하고 중요한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침이 없었다.

12) “Thomas Jefferson”, (<http://inventors.about.com/library/inventors/bjefferso.htm>), 2003년 1월 30일 방문.

13) “Jefferson and the patent system”, ([http://cti.itc.virginia.edu/~meg3c/classes/tcc313/200Rprojs/jefferson\\_invent/tjhome.html](http://cti.itc.virginia.edu/~meg3c/classes/tcc313/200Rprojs/jefferson_invent/tjhome.html)), 2003년 1월 30일 방문.

14) Edward C. Walterscheid, “The Use and Abuse of History :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omas Jefferson's Influence on the Patent Law”, IDEA 195 (1999) Volume 39-Number 2, 200면.

특허등록의 3가지 요건(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유용성)의 기초를 제페슨이 닦아 놓았던 것이다. 제페슨은 초기 미국 연방 특허 정책 배후의 추진력이었다.<sup>15)</sup>

### 3. 미국 대통령과 지식재산권 정책

#### 3-1. 개요

초기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허에 대한 관심이 특허 제도 형성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국가의 틀이 확고히 되고 신생국가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특허에 대한 인식은 뒤로 물려나 있는 듯 하였다.

미국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큰 역점을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관심도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 물가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부터 미국 산업구조가 변화를 겪으면서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동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국내 과학기술 정책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외 무역정책이 상위정책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즉, 카터 대통령(1977년~1980년) 말기부터 시작하여 40대 레이건 대통령(1981년~1988년)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경제성장 및 경쟁력 유지의 도구로서 지식재산권을 바라보는 인식은 미국의 대통령이 펼치는 국내 및 대외 정책에 있어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은 연설,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설명 및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시 대통

령(1989년~1992년), 클린턴 대통령(1993년~2000년), 그리고 W. 부시 대통령(2001년~현재)을 중심으로 연설 및 기자회견 등에서 나타난 미국 대통령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sup>16)</sup>

#### 3-2.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투자 및 보호

1970년대부터 그동안 미국이 강세를 띠고 있었던 제조업 등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미국내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더군다나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산업국의 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무역적자는 국내의 재정적 자와 더불어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냉전시대를 통하여 발전시켰던 군사과학기술을 민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산업의 중흥을 국가 경쟁력 회복과 연계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1989년 4월 5일 「과학 및 기술의 국제 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메시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지난 5년 (1983~1988년) 동안 과학기술 산업을 장래 세계 경쟁력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개념은 미국에서 지배적인 주제가 되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과 본인은 균형, 상호주의 및 필적하는 접근에 기초를 둔 연구개발에서의 국제 협력으로 미국은 혜택을 얻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 위치도 향상된다고 믿고 있다. 미국의 교역 상대국 및 발전된 개도국과의 다자간 포럼 및 양자간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활발하게 증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21세기의 경

15) Walterscheid, supra note [13], 202면.

16) 본 원고에서 인용된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성명문, 서신 등에 대한 자료원은 “Weekly Compilation of Presidential Documents” (<http://www.access.gpo.gov/nara/nara003.html>)으로 검색어를 “patent”, 혹은 “intellectual property”를 쳐서 해당되는 문헌들을 모두 읽고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문헌은 1993년 클린턴 대통령부터 현재까지이지만, 그전 부시 대통령(1989년~1992년)에 대한 문헌은 2000년 연구보고서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윤권순/정성창/임근영,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를 작성할 때에 동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통한 문헌 조사 및 정리를 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에 대한 전문은 동 보고서 <부록 1 : 미국 대통령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록>(277~30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발전은 오늘날 전세계의 실험실에서 실행된 연구개발(R&D)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음을 밝혔다. “공공 및 사적분야에서 모두 과학 기술 발전에 대한 물적 및 인적자원의 혁신 및 공헌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다. 국가의 장래 복지는 기초과학에서부터 상업적 상품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기술 이전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념은 1990년 3월 23일, 「과학기술의 국제활동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 지도부에 제출하는 서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세계 시장이 점점 더 경쟁력이 심해져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긴 하지만, 더 이상 모든 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지원과 노력을 집중시키면서 다른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우리를 따라잡고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세계화는 우리의 지도력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경제, 대외관계가 어쩔 수 없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정책 결정은 그러한 결정을 둘러싼 과학기술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전세계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임을 확신시키기 위한 보다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따라서 국제 과학기술 협정의 내용에 반드시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및 공정한 처분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기초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즉, 1992년 9월 2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의 전국 기술 발의안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옛날에는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필요한 2가지 요소가 자본과 기술이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그 세 번째 요소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

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미국은 항상 그것을 소유해 왔다. 수년동안 미국의 과학자들은 가장 많은 과학 논문을 내고, 가장 많은 새로운 특허와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한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 기초 연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 3-3.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준비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 호황은 좋은 사회 정책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피력하였다. 즉,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축적된 기술을 연마하고 이러한 신경제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스스로도 계속해서 전자상거래에서부터 생명공학까지 전 세계의 미래를 형성해 가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sup>17)</sup> 따라서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이하여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7월 1일 행정부의 조치를 이끌어줄 원칙을 밝힌 「전세계 전자상거래를 위한 틀(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보고서를 승인하고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의 원칙을 선언하고,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적 토의 및 협의를 위한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급부상하는 디지털 시장을 위한 미 행정부의 비전을 밝혀놓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동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의 특허보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즉, “상무부 장관은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고, 전세계적으로 특허 가능한 혁신 보호를 위해 다른 정부와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특허 가능한 혁신을 보호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을 명하였다.

따라서 우선 미국 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통과시켜 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 및 음반 조약을 비준

17) 1999년 12월 3일, 「경제 성장에 대한 연설」

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일본 및 호주 등과 공조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에 달려 있다. 전자상거래의 인프라에 관련되는 특허권의 전 세계적 보호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WIPO 저작권 조약 및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의 즉각적인 비준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도움을 받을 것이다.”<sup>18)</sup> 그리고 “기술 종립을 기초로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새로운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은 이에 관해서 건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 조약에서의 조치의 이행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sup>19)</sup>

### 3-4. 생명공학에서의 혁신과 특허제도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3월 14일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로서의 특허에 대한 균형을 강조하였다. “인간 게놈 연구의 완전한 장래성을 깨닫기 위해서, 인간 DNA 서열 및 그 변종을 포함한 인간 게놈에 관한 생기초 데이터는 모든 곳에서의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보에 대한 방해받지 않은 접근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발견이 증진되고, 전세계의 건강이 개선되며, 모든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유전자를 기초로 한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또한 중요한 새로운 건강 관리 제품의 개발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같은 날, 「국가 과학 및 기술 메달 수여 연설」에서도 잘 드러났다.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을 계속하도록 동기 부여가 필요하

다. 자신들의 발견한 것과 그것의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특허 보호가 필요하며, 그러한 특허 보호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반면, 과학자들이 유전자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경주함에 따라 과학과 기술에서 미래는 개방성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과 특허 및 실시허여에 대한 책임있는 사용이 유전자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기술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이러한 혁신을 더 많은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W. 부시 대통령에 있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2002년 10월 21일에 W. 부시 대통령은 일반 의약품을 시장에 더 빨리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지만,<sup>20)</sup> 동 발표문에서 대통령이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자 (의약품) 특허권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점이다. “미국에서 혁신에 대한 보상방법 중의 하나가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여 성공했다면, 발명의 판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할 수 있다면 이의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기까지 약 8억달러의 비용이 듈다. 특허권의 보호가 없다면, 그러한 위험을 감당하여 기꺼이 투자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특허권의 보호가 있다면, 미국의 신약개발제약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할 것이며, 전 세계의 의료보장제도는 복제가 불가능한 미국의 혁신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특허권은 수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이는 우리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는 다른 약품 회사들은 훨씬 저가에 일반 의약품 형태로 자유롭게 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된다.”

18) 1998년 5월 15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미국·일본 공동 성명」

19) 1998년 11월 30일, 「전자상거래에 관한 호주와 미국의 공동성명」

20) 「전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FDA 계획」, *Legal Times*, 2002년 10월 28일자.

### 3-5. 미국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에 앞장서서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1970년대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1980년대의 정책은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그 열매를 맺어 10년 동안 미국은 유래 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다. 기술혁신에 대한 특히, 즉 지식재산권 보호로만 미국이 이러한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국내외적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일조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내의 친특허(pro-patent) 주 의는 대외정책, 즉 무역정책으로 나타났다. 국제 무역수지 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은 1986년 GATT/우루과이라 운드 협상에 지식재산권을 의제로 상정시키는 것에 성공한 이후로 더욱 활발하게 다자간, 지역간 그리고 쌍무간 무역 협상 및 협정에 있어서 지재권 보호를 필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89년 11월 7일 부시 대통령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메모란덤(memorandum)」에서 “나는 미국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및 양자간 협상에서 지재권 시행을 강화하는데 최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천명한 것에 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도 “NAFTA 협정은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식재산권과 투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지식재산권의 일부이고, 사람의 창조적인 기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것도 지식재산권의 일부이다. 미국이 이런 모든 아이디어를 개발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큰 부분인 것이다. 외국인들이 미국의 기술 혹은 아이디어를 가지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냉전동안 닫혀졌던 미국 제품에 대한 외국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안 연간 370억 달러의 컴퓨터, 수퍼 컴퓨터, 통신 장비를 생산해왔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그와 같은 다른 제품도 그정도의 생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전세계에 걸쳐 미국 국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NAFTA의 조항이 있음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21)</sup>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하에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각국의 지도자들과의 회담 등에서 상대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들고자 한다.

먼저 지난 1993년에 브라질이 국내 특허법 미비로 USTR에 의해서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어 무역 마찰을 겪고 난 이후, 클린턴 대통령은 1995년 4월 20일 「카르도소 브라질 대통령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브라질이 세련되고 다양한 제품의 하이테크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법이 있어야만 한다. 이는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이는 브라질이 경제 성장을 계속하게 해 줄 것이다.”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써가며 브라질에서의 강력한 지식재산권법을 통과시키는데 압력을 가하였다. 이는 1995년 1996년과의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각각의 해에 중국도 스페셜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직면할 뻔하였다. 이에 역시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내 법률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하였다.<sup>22)</sup>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21) 1993년 11월 4일, 「렉싱턴의 국제 렉스마크사의 직원들 앞에서 NAFTA에 관한 연설」

22) 1996년 5월 20일, 「태평양 지구 경제 이사회에서의 연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협상을 이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sup>23)</sup>

#### 4. 글을 마치며

이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대통령은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 미국 건국 초창기에 제퍼슨 대통령의 발명과 특허에 대한 인식은 특허제도가 단단히 설립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를 이어 받아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의 장점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미국 번영의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서 미국 대통령은 신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이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적절한 보호가 미국의 경쟁력 회복 및 유지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유용한 도구가 특허제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특허제도 인식이 뒷받침이 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지금 이웃 일본에서 벤치 마킹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002년 7월 고이즈미 총리가 발표한 지적재산전략 대강이 그것이다. 이는 일본 제조업의 사양화와 경제의 소프트화에 따라 산업구조를 변경하려는 일본 지도부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도 특허를 보유한 적이 있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특허를 보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기보다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허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여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던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벗어나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길로 국민을 이끌 수 있는 특허 대통령을 바라는 바이다.

빌특2003/3

23) 1999년 6월 1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학 졸업식에서의 연설」